

---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AI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실증과제  
공모안내서**

---

20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사업 추진절차

##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사업신청 및 접수
3. 문의처

## III.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유의사항

I

---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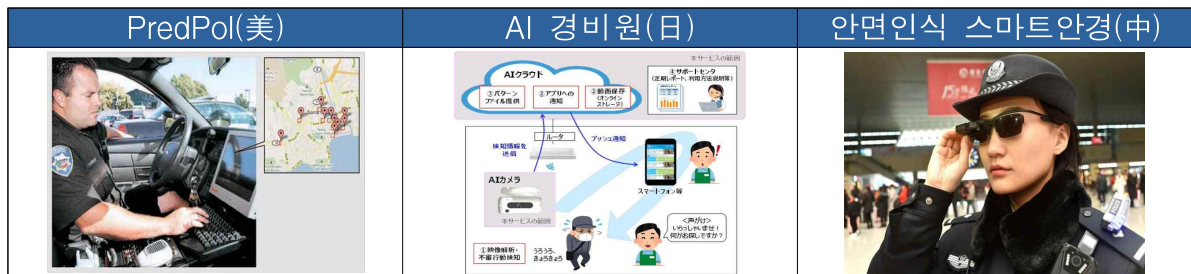
---

---

# 1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로, 全 산업·사회에 과급되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 \*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 분야는 딥러닝 이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실종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 및 인구 고령화, 소형 가구 증가 등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실종자 신고 증가 추세로 국민안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 '16년 38,281건 → '17년 38,789건 → '18년 42,992건 → '19년 42,390건('20. 경찰청)
-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실종자 검색 시스템, AI 추적 시스템 등 국민안전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 시도 및 상용화



- 국내는 방범용 CCTV 등 다양한 안전 인프라가 既 구축되어 있는 만큼 AI융합으로 국민안전 확보하고 新 AI영상산업 육성 가능
- 이에,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협력하여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실행' 공동 추진
  - 이를 통해, 지자체 방범용 CCTV 등 既구축된 안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국민안전 체계를 확보
  -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공공 분야 실증 및 시장수요 제공을 촉진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력 조기 확보와 초기 수준의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기여

## 2

## 사업 목표

- 지자체 방법용 CCTV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실증사업을 통해 미아,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 3

##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17)
  - \*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각 산업의 융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
- 제5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지시사항(20.4.22)
  -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준비
- 한국형 뉴딜 정책 방향 발표(20.5.7)
  - \*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발표(관계부처 합동, '20.5.7)

###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NIPA 지원사업관리요령
-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 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 제·개정 완료시 적용규정 대체

## 4

## 사업내용

### □ 추진방향

- AI 영상분석 실증랩의 영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국민안전 솔루션 개발을 통해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기술 실증

### □ 추진방법

- (추진방식) 인공지능 전문기업(컨소시엄 가능) 5개 공모(30억원 이내)  
\* (일정) 과제공모·협약(2월~4월), 수행(협약월~12월, 8~9개월간)

### □ 주요 사업내용

- (AI융합 국민안전 실증) 미아 등 대상물의 특징(사진, 인상착의 등) 정보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검색하고 후보자를 식별·추적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
- (경찰청 연계) 경찰청-지자체 간 미아 등 보호자 정보 연계 및 영상검색, 동선 추적 결과를 송수신하기 위한 연계 기능 개발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솔루션 개발·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연계시스템 활용 시나리오(예시) >



- (실증랩 운영) 지자체 컨소시엄이 구축한 실증랩 공간과 가공한 CCTV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에 활용 지원
- (실증랩 위치)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 2~3층

- (실증랩 규모) 98평(325m<sup>2</sup>), 최대 20명 수용
  - \*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이 상주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 수행
- (실증랩 장비) 데이터 서버, 보안시스템 등
  - \* 학습용 GPU 서버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실증랩 전산실에 직접 반입
- (실증랩 활용) 실증랩에서 학습용 데이터 취득, 가공,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
  - \* 기 확보('20) 및 확보될 지자체(대구 수성구) CCTV 영상을 가공하여 인공지능 기업에게 제공. 데이터는 실증랩에서만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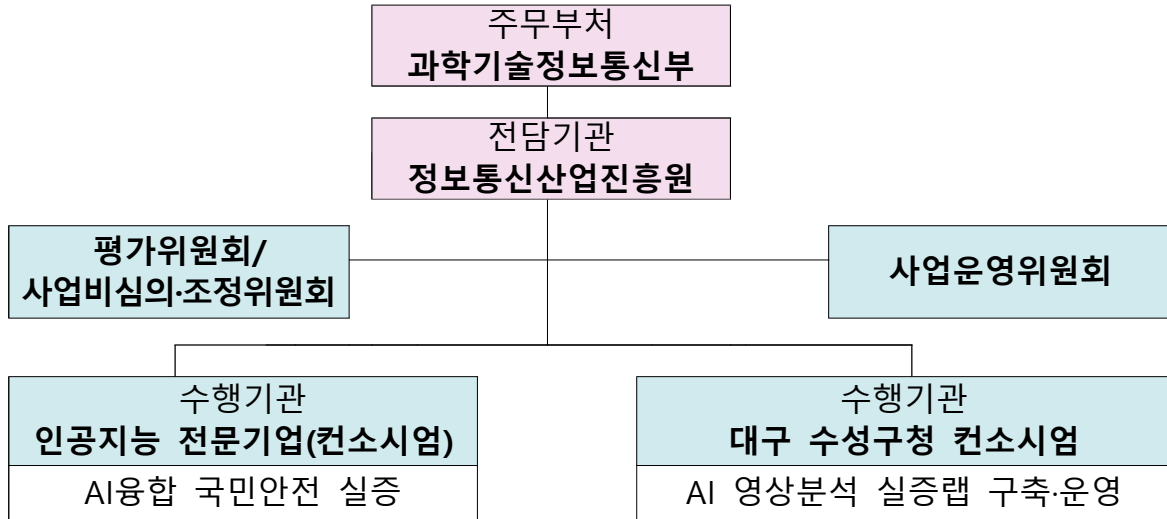
< 실증랩 구성 -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 >



5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 추진체계



□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li> <li>· 新수요 창출형 AI융합 프로젝트 시행 계획 총괄</li> </ul>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사업 공모 및 협약</li> <li>·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li> </ul>
평가위원회/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 제안서 심의</li> <li>·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li> <li>·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li> </ul>
사업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과기정통부), 협력부처(경찰청),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대구 수성구청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사업수행 방향성 점검 등 정례 회의체 운영</li> </ul>
(수행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실증</li> <li>·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li> <li>·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li> </ul>
(수행기관) 대구 수성구청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랩 구축(고도화) 및 운영</li> <li>·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및 사업모델 기획</li> <li>· 과제 진행현황 및 착수·중간·결과보고</li> <li>·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li> </ul>



## 6

## 사업 추진절차

추진내용(일정)	추진 주체
공모 (’21. 2월)	• 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21. 3월)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전담기관(NIPA)
↓	
선정평가 (’21. 4월)	• 전담기관(NIPA), 평가위원회 * 서류 및 발표평가
↓	
사업비심의·조정 및 확정 통보 (’21. 4~5월)	• 전담기관(NIPA),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최종 지원대상 확정
↓	
협약 및 사업비 교부(1차) (’21. 4~5월)	• 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사업비 교부 1차(4~5월), 2차(12월) 예정이나, 정부 자금 현황에 따라 교부일정 변경 가능
↓	
과제수행 (’21. 5~12월)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1. 7~8월)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전담기관(NIPA) * 전담기관은 과제수행 현장 확인 및 진도점검
↓	
사업비 교부(2차) (’21. 12월)	• 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결과보고 (’21. 12월)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전담기관(NIPA)
↓	
결과평가 (’21. 12월~’22. 1월)	• 전담기관(NIPA)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받아야 함.
↓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22. 2월)	•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 전담기관(NIPA)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종료 후 5년간 과제 결과 성과(실적) 제출

\* 사업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

## **사업 지원내용**

---

## 1

## 지원내용

## □ 지원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 대기업 참여 불가
지원기간	○ 2021. 협약월. ~ 2021. 12. 31. (8~9개월) * 공모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규모	○ '21년 30억원 이내 ○ 과제당 최대 6억원(총 5개 과제)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 비영리기관(총사업비의 100% 이내), 법인 중소기업(총사업비의 80% 이내),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과제 수행내용	○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 - 객체 인식, 식별,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 및 경찰청 연계기능 개발 ○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기술 검증 *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시험성적서 제출)

## □ 지원대상

-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식별·추적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접수 마감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 □ 지원기간

- 2021. 협약월. ~ 2021. 12. 31. (8~9개월)
  - \* 공모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6억원(총 5개 과제, 30억원 이내)
  - \* 정부출연금은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 방식 별도 공지
  - \* 지원 규모는 사업비 심의·조정 결과 및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과제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세목은 협의 후 편성

□ 지원조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중견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 정부출연금 : 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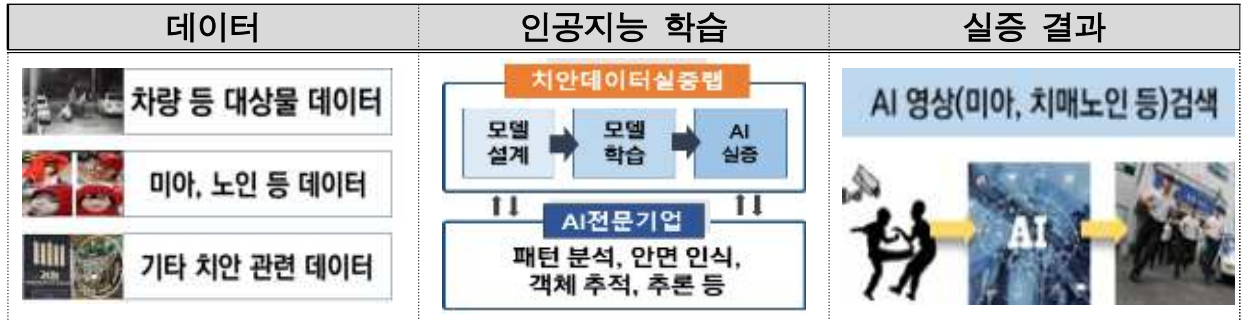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과제 수행내용

- (AI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미아 등 대상인(물)의 사진 및 인상착의·특징을 기반으로 영상검색, 이동경로 추적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

< AI융합 국민안전 실증 전체 흐름도 >



- (객체 인식) CCTV 영상에 나타난 사람, 차량 등 객체 인식 기술 개발
  - \* CCTV 영상 기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실증랩에서 제공
- (객체 식별) 특정된 대상(미아, 치매 노인, 차량 등)의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객체\*를 식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모델 학습
  - \* (예시) 사람객체 정보 : 얼굴, 헤어, 옷차림, 악세사리 등 / 차량객체 정보 : 종류, 색상, 등록번호 등
- (객체 추적) 특정된 대상(미아, 치매노인, 차량 등)의 다중 CCTV 내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기술 개발
- (연계 기능) 경찰청-지자체 간 미아 등 보호자 정보 연계 및 영상 검색, 동선 추적 결과를 송수신하기 위한 연계 기능 개발

※ 실증랩을 활용한 기술결과물의 실증방안 제시

- (기술 검증) 객체 인식, 식별,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 등의 정확도 측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검증 수행
  - \* (‘21년 알고리즘 정확도 목표) 객체 식별, 객체 추적 각 60% 이상
  - \* 검증은 인공지능 기업과 협의하여 선정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시험성적서 제출)

□ 성과물 귀속

○ (결과물 활용) 실증랩에서 지자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고도화된 기술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사업자 공동 소유\*

\* 기술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 간 유·무형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성과물의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일자리)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 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대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li> <li>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li> <li>3. 부분자본잠식</li> <li>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li> <li>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li> <li>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li> </ol>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공모 : 탈락처리</li> <li>-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li> </ul> </li> <li>·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li> </ul> </li> <li>·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li> <li>·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 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li> </ul> </li> </ul>

## 2

## 사업신청 및 접수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

####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AI융합 국민 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 ○ 전산 접수 마감 : '21. 3. 15.(월)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 접수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기업	대학, 연구소, 비영리 기관
1. 사업계획서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3. 수행기관(주관, 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4. (최근 3년) 재무제표 ('18년~'20년) * '20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17년~'19년)	X	○	X
5. 중소기업 확인서	X	○	X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9. 현금출자(납입) 약약서	○	○	X
10.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11. 평가항목 참조표	○	주관기관	
12. 발표자료	X	주관기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3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AI산업2팀 김재현 책임(kjh5315@nipa.kr)	043-931-5797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smart@nipa.kr)	070-5151-8239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성과목표 측정기준과 방법 제시) 객체 인식, 식별, 추적 기술 개발의 정량적 성과목표와 신뢰할 수 있는 성과목표 측정기준, 방법 제시
  - (기술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계획) 대상물의 사진과 인상착의·특징을 기반으로 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성과목표 및 기술성과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기술성과(객체 식별 정확도, 추적 정확도) 목표 제시
  - 기술성과 목표 달성 방안(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 (수행조직 및 전문성 제시)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조직(인공지능 전문기업) 구성 및 전문성 상세 제시
  - 과제수행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 \* 1명 이상의 과제 전담인력은 사업관리(주무부처, 전담기관 등)의 요구사항 및 이슈 사항 대응,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수행기관(위탁용역 포함)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시
- (사업 최종목표 구체화) 사업 최종목표에 대한 목표치 및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안 및 전략을 제시
- (과제 수행과정 공유) 과제 수행과정 공유 및 환류 계획
  - 과제 수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산출물 내역 및 산출 시기 제시
  - 수시 및 월간보고(NIPA 참석),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일정계획

- (사업운영위원회 참석) 주무부처(과기정통부), 협력부처(경찰청),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인공지능 전문기업, 대구 수성구청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수행 방향성 점검 등 정례회의 참여

○ 기타 사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의 차별성(유사·중복) 확인
- 신규인력 창출 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하여 단계별 실증구현, 활용 및 확산 방안 제시
-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 과제(연구 포함) 및 외부용역(하도급)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비 정산은 당해 회계 연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NIPA)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검증을 받아야 함.

## Ⅲ

---

# 사업자 선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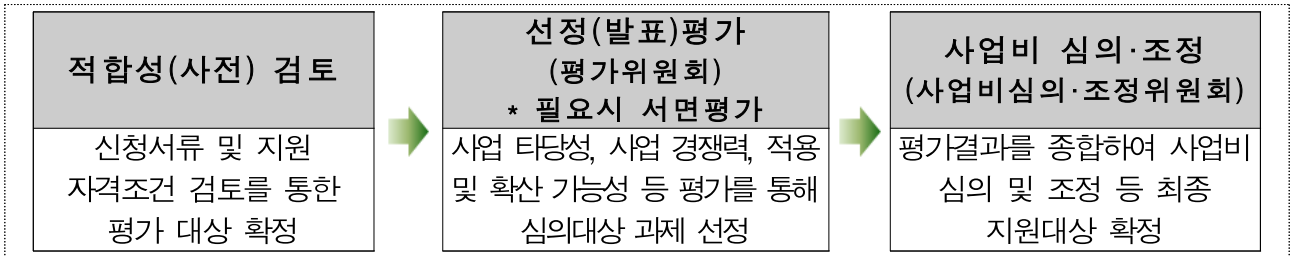
---

# 1

## 평가 절차

### □ 선정 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

## 평가 방법 및 기준

###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선정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3배수 초과할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 발표평가 결과는 NIPA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5)	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li> <li>-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li> <li>-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li> <li>- 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설정 목표의 도전성</li> </ul>	10
	사업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li> <li>- 참여기관 인력의 전문성, 참여기관의 실적 및 경영상태 등</li> <li>-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li> <li>-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li> </ul>	15
사업 경쟁력 (40)	사업 전략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li> </ul>	15
	기술개발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적절성 및 우수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예상 결과물의 우수성</li> </ul>	25
적용 및 확산 가능성 (15)	적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및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li> </ul>	10
	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li> <li>- 인공지능 기술개발 이후의 타산업, 해외진출 등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li> </ul>	5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li> <li>- 일정에 따른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li> <li>-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li> </ul>	5
	품질관리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li> <li>-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li> <li>- 산출물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li> </ul>	10
일자리 창출 (5)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li> <li>-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li> <li>-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부 등</li> </ul>	5
<b>총점</b>			<b>100</b>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3 기타 유의사항

###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주관, 참여)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의 인건비는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등 ICT 비R&D 관련 규정은 폐지·개정·신규제정 예정으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신규제정 규정에 따라 과제에 적용 예정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해 배정  
\* 사업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은 위탁용역 불가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참조
- 편성된 사업비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는 불가하며, 컨소시엄 內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2021. 협약월. ~ 2021. 12. 31.

## □ 기타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NIPA(전담 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야 함.